

서울특별시의회
제331회 정례회

서울특별시교육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사무의
민간위탁 동의안

검 토 보 고 서

2025. 6. 19.

교 육 위 원 회
수 석 전 문 위 원

서울특별시교육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

검 토 보 고

I . 회부경위

1. 의안번호 : 제2877호
2. 제 출 자 : 서울특별시교육감
3. 제출일자 : 2024. 5. 23.
4. 회부일자 : 2024. 5. 26.

II . 제안이유

1. 우리 교육청은 신청사 이전에 따라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고자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계획하고 있음
2. 민간 위탁을 통해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으로 직원들의 복지를 제고하고자 함

III. 주요내용

1. 위탁사무명 : 서울특별시교육청 직장어린이집 운영

○ 운영 개요

운영방식	정 원	교직원	보육실	예산소요액	본예산 편성액	개원시기
위탁	60명	15명 (예정)	6실	10억원 (1년)	6억 5천만원 (1년)	2026년 중
7개 시도교육청 위탁 운영 중	놀이터 면적 (212.22㎡) 기준에 의한 산출	· 원장 : 1명 · 교사 : 12명 · 조리원 : 1명 · 사무원 : 1명	0세 ~ 5세	인건비, 운영비, 재산조성비 등 (1년 기준)	· 교육청 부담: 65% · 사업주 부담: 35%	향후 추진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

※ 향후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

2.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

가. 추진근거

- 영유아보육법 제24조
-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2

나. 추진 필요성

- 신청사 직장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과 효율성을 갖춘 운영체계 구축 필요
- 민간 위탁을 통해 다양한 보육수요 대응 및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가능

3. 위탁 대상 사무 등 위탁 범위 : 어린이집 보육시설 관리 전반

- 보육 원아 모집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, 운영비 집행 및 결산, 보육료 징수, 교직원 임면, 시설물 관리 등

4. 민간위탁 기간 : 2년(2026년 ~ 2028년)

※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(예: 개원 시기 등)

5. 수탁자 선정방식 : 공개경쟁

- 「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및 「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운영 지침」 준용
- 수탁기간선정심사위원회 구성 : 9명 이내
- 공모 후 접수된 제안서를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에서 평가요소 및 평가 항목에 따라 평가, 선정

6. 예산 규모

- 어린이집 연간 운영비(예산) : 10억원 내외(1년)
- 우리 교육청 민간 위탁 지원비(예산) : 6억 5천만원 내외(1년)

어린이집명	구분	인건비	운영비	보육 활동비	수익자 부담경비	재산 조성비	기 타	계
서울특별시교육 청	연간 운영비 합계(100%)	550,000	100,000	150,000	50,000	150,000	-	1,000,000
직장어린이집 (가칭)	민간위탁 지원금액(65%)	357,500	65,000	97,500	32,500	97,500	-	650,000

Ⅳ . 참고사항

1. 신청사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계획 : [별첨]

2. 관계 법령

- 영유아보육법 제10조, 제14조, 제24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
-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2

V. 검토 의견(수석전문위원 박광선)

1.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

- 동 동의안은 2025년 5월 23일 서울특별시교육감에 의해 의안번호 제2877호로 제출되어 2024년 5월 2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.
- 동 동의안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서울시교육청의 직장어린이집을 민간 위탁을 통해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.

2. 주요 검토의견

- 「영유아보육법」 제14조¹⁾ 및 동 법 시행령 제20조²⁾에 따라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설치하여야 합니다.
-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2016년 신청사 건립 시 직장어린이집을 지상 2층의 별동으로 증축하는 것으로 계획하였고, 2026년 신청사로 이전할 경우 직장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기 위해 동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.
- 현재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26조제3항³⁾ 및 「민간위탁에

1) 「영유아보육법」

제14조(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)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. 다만,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·운영하거나,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어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(이하 이 조에서 “위탁보육”이라 한다)하여야 한다.

2) 「영유아보육법 시행령」

제20조(직장어린이집의 설치)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장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한다.

② ~ ⑤ 생략

3) 제26조(사무의 위임·위탁 등) ①~② (생략)

③ 교육감은 조례 또는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관한 조례」 제4조⁴⁾에 따르면 민간위탁 대상사무는 교육감의 소관사무 중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각호에 정한 사무에 한해서 민간위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

- 이러한 구성요건에 따를시 직장어린이집 운영은 「영유아보육법 시행령」 제25조에 따라 교육감이 설치하는 소관 사무이며, 이는 시민의 권리·의무에 해당하지 않는 소속 직원의 복지와 근로환경 개선 사무라 할 것입니다.
- 더욱이 보육사무는 전문성과 지속성이 요구되는 분야로서 운영 전반을 수탁기관이 담당할 수 있는 사무라 할 것인바, 직장어린이집 운영 사무는 민간위탁이 가능한 사무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

○ 한편 동 조례 시행규칙 제2조⁵⁾에 따르면, 위탁 대상 사무의 소관 부서는 사무의 민간위탁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사무 또는 민간위탁 관련 전문가의 자문 등을 거쳐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.

-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직장어린이집을 직영 또는 위탁 등 운영 형태에 따른 비교 분석을 거쳤으며, 인건비 규모, 이용 대상 등에 대한 사항 등을 검토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 또한 검토한 바 있습니다.

4) 「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

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 ① 교육감은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사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
4. 그 밖에 단순 행정사무로써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

② 생략

5) 「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」

제2조(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) ① 위탁 대상 사무의 소관 부서(이하 "소관 부서"라 한다)는 사무의 민간위탁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사무 또는 민간위탁 관련 전문가의 자문 등을 거쳐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.

② 소관 부서는 민간위탁으로 인해 해당 사무에 종사한 기존 인력의 축소가 예상될 경우 해당 인력관계 부서 및 노동조합의 의견을 참고하여 검토한다.

[표-3] 직영 및 위탁 운영시 인건비 현황⁶⁾

구분	원장(1명)	보육교사(12명)	실무사(1명)	조리원(1명)	합계	비고
위탁	44,187천원	451,488천원	37,624천원	31,711천원	565,010천원	20호봉 기준
직영	51,606천원	534,468천원	44,539천원	38,331천원	668,944천원	30호봉 기준

- 또한 현재 국가 차원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을 위한 유보통합 사업이 추진중에 있으나, 서울시교육청이 어린이집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‘유보통합 3법⁷⁾’이 개정되어야 하는 등 실질적인 유보통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, 이에 현재 서울시교육청이 어린이집에서 수행하던 만 3세미만의 보육 등에 전문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.
-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을 때,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민간위탁 운영 사무는 운영 인력 관리의 효율성과 만 0세부터 만 5세까지 영유아의 전문적인 보육 등을 시행하기 위해 위탁 운영하는 것이 가능할 것인바, 동 민간위탁 동의안은 별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.
- 다만 현재 유보통합은 제도적으로 완전히 실현되지 않았지만, 교육부는 유보통합이 지향하는 교육·보육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‘영·유아학교’ 시범학교를 운영하는 등 현장에서는 영유아 교육과 보육을 통합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추진하고 있으며,⁸⁾

이에 따라 서울에서도 유치원 2개 기관, 어린이집 4개 기관이 교육

6) 서울특별시교육청 총무팀 보고자료(2025.6.12.). 신청사 직장어린이집 위탁 운영 필요성 보고.

7) 1. 「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서지영의원 등 15인, 의안번호 2205079, 제안일자: 2024.10.30.)

2.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」(김민전의원 등 13인, 의안번호 2205081, 제안일자: 2024.10.30.).

3. 「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」(김민전의원 등 13인, 의안번호 2205080, 제안일자: 2024.10.30.).

8) 교육부 보도자료(2024.8.20.). 유통합 체감을 높이기 위해 전국 152개(가칭) 영·유아학교 시범운영 실시한다.

부의 영유아 시범학교로 선정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.

-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은 신청사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할 경우, 교육부의 영유아 시범학교의 모델을 자체적으로 적용하여 유보통합을 미리 대비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, 이에 향후 위탁기관 선정 및 계약 체결 시 관련 사항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.

- 이상으로 「서울특별시교육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」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의안심사지원팀장	정진국(2180-8263)	입법조사관	이가영(2180-8270)
----------	----------------	-------	----------------